

의안번호	2210482
의 퇴 인	박수현 의원
회 답 일	2025. 6. 12.
추 계 번 호	25B285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상생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함(제3항)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자를 기존 ‘정부 외의 자’에서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 변경함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u>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0분의 5를 기준으로 한다) 지원을 포함하여</u>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제4항)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의무규정
2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유효기간)	<u>제18조의2제4항</u>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u>20년간</u> 효력을 가짐 ※ 기금 조성액 목표에 관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 부칙 제2조(유효기간)	

2. 상세 사유

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개요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¹⁾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고,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

- 상생기금 설치 이후 총 2,672억 7,837만원 조성('25. 4월 현재)
 - － (출연) 공공기관 58.3%, 민간기업 41.5%, 개인·기타 0.3% 차지
 - － (2025년 조성액) 4월말 기준 38.1억원
 - － (기금운용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참고자료 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현황

1) 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표 1] 연도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및 단체		합 계
	참여	금액	참여	금액	참여	금액	
2017	14	30,625	2	301	68	39	30,965
2018	30	17,930	9	5,215	27	14	23,159
2019	43	17,543	26	5,045	9	5	22,593
2020	65	20,435	76	17,053	16	107	37,595
2021	94	25,739	70	19,684	5	102	45,525
2022	101	15,945	111	19,245	7	226	35,416
2023	117	13,387	103	16,941	5	167	30,495
2024	116	13,627	89	20,945	9	81	34,653
2025.4	12	420	27	3,387	—	—	3,806
다년협약 잔여분	1	70	1	3,000	—	—	3,070
총 계	133	155,721 (61.0%)	221	110,816 (38.7%)	134	741 (0.3%)	267,27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근거 마련 및 기금 조성액 목표 조항 유효 기간 연장(안 제18조의2 및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 부칙 제2조)

- 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조성액 목표 조항의 유효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부 출연) 현행법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등으로 상생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정부’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금 조성액 목표 기간 연장) 현행법은 상생기금의 조성 목표액 및 조성 기간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0년간’ 조성하도록 함

[표 2] 개정안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변경

	현행	개정안
재원조성방법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
조성기간	10년간 (2017.1.17.~2027.1.16.)	20년간 (2017.1.17.~2037.1.16.)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특히, 개정안은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금액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0분의 5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향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부 외의 자의 출연 규모 및 상생기금 총 조성액의 과부족 여부, 상생기금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한 정부의 출연 여부 및 출연 금액, 출연 금액의 기준이 되는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최근 5년간 관세 징수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3] 최근 5년간 관세 징수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관세	70,585	82,270	103,241	72,883	69,723

자료: e-나라지표 검색(검색일 2025.6.11.)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설립목적

- 상생협력을 통한 대·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양극화를 해소하고, 농어촌·농어업인의 상생협력을 도모

□ 근거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²⁾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³⁾

□ 연혁

- '04.12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립 및 출범
- '17.01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칭 변경
- '17.11月: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 법제화('18.5.29 시행)
- '23.07月: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 '25.04月: 변태섭 사무총장(제7대) 취임

□ 역할 및 기능

-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 조직 및 인원

- (조 직) 1처 4본부 2실 17부 3팀 / (인 원) 189명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조직도>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https://www.win-win.or.kr/kr/pages/about/organ.do>>

□ 예결산 현황

<최근 4년간 재단 예산 및 결산 현황: 2022~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소관 부처 등	주요 사업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생태계사업, 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 등	41,097	39,100	42,040	36,398	38,928	33,555	42,57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운동	146	146	138	138	—	—	—
	농림축산식품부	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홍보	500	498	222	221	242	242	180
	해양수산부	—	—	—	—	—	—	—	—
	고용노동부	상생연대형성지원	—	—	—	—	4,900	4,338	6,532
	소계		41,743	39,744	42,400	36,757	44,070	38,135	49,291
정부 외	위탁사업	대·중소기업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등	31,156	25,445	27,305	23,116	19,744	12,112	33,268
	민간 출연금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기금	474,963	366,398	419,460	466,366	268,302	332,521	418,436
	자체수입		9,472	1,818	19,381	3,609	25,326	8,223	22,737
	소계		515,591	393,661	466,146	493,091	313,372	352,856	474,441
합계			557,334	433,405	508,546	529,848	357,443	390,990	523,85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출자료

[참고자료 2] 기금 출연금 부족 시 정부의 조치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도입 이후 제18조의2조제4항⁴⁾에 따라 정부가 연도별 기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추진한 조치사항

- 민간기업의 자발적 출연 확대를 위해 법령 개정, 세제혜택, 평가우대,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지속 개선

① 법령 개정

- 현금 외 현물 출연 허용 및 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FTA농어업법」 개정('19.8.27. 개정, '19.11.18시행)

② 법인세제 혜택

- 지정기부금 손금 산입(소득금액의 9~24%)(법인세법 제24조)
- 출연금의 10% 법인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과 법인세액 10% 공제 혜택을 중복하여 제공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③ 평가우대

- (민간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 지역경제활성화 지표 내 기금출연 및 지원 실적 등에 따라 업종별 2~3점 부여(동반성장위원회)
 - * 동반성장지수: '19년~'21년(1~2점) → '22(1~1.5) → '23(1.5~2) → '24~'25(2~3)
-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기금출연 지표 내 기금 출연, 집행률 및 노력도에 따라 최대 3.0점 부여(중기부)
 - * 공공기관동반성장 평가 : '17년(0.3점) → '18~'19(1) → '20~'25(3)
 - ** '25년 : 출연금액 증가율 또는 규모(1.0점), 출연금액 대비 기금 집행률(0.5점), 기금 출연을 위한 기관의 노력(1.5점)
- (농어촌ESG실천제도) E(환경)부문, S(사회)부문, G(거버넌스)부문의 노력 및 성과, 출연협약 또는 지출액 등 종합적으로 심의(협력재단)
 - * '24년도 총 52개사 인정기업 선정('22년 23개사, '23년 41개사 인정)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포상

－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포상

＊ ('18) 농식품부 2개 → ('19)농식품부 20개 → ('20)농식품부 20개, 산업부 5개
→ ('21~'22)농식품부 20개, 산업부 10개, 해수부 3개, ('23)농식품부 20개, 산업부
10개, 해수부 3개, 동반위 10점 → ('24)농식품부 20개, 산업부 10개, 해수부 3개,
동반위 16점 + 정부포상

⑤ 상생기금 조성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소통 강화

－ (홍보) 기금 인지도 제고 및 기업 출연 활성화 도모

－ (소통) 워크숍, 설명회 등을 통해 상생 협력 우수사례 소개 등 긍정적인
문화 확산 및 기금 활성화 유도